

의안번호	2208306
의 퇴 인	권영진의원
회 답 일	2025.3.31
추계번호	25B099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04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억 200만원(연평균 2,04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49조의2 신설)	20.4	20.4	20.4	20.4	20.4	102	20.4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5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 관광자원화, 국민건강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부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공원 시설 부지면적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49조의2 신설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도시공원위원회를 둠(제1항) 국가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해있는 공원 및 녹지의 개발 및 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4	안 제25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	• (미첨부3호) 현재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으며, 향후 재정지원 대상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계 부처 협의와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 국비 지원의 규모, 내용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49조의2 (국가도시공원위원회)	○	• (추계)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운영비용(안 제49조의2 신설)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49조의2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 운영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불확정적임
 - 다만, 본 추계에서는 국토교통부 내 운영중인 위원회 평균 위원수, 평균 회의개회 일 수 등을 적용하여 국가도시공원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국토교통부 3분기 행정위원회 평균 위원수 24명(공무원 위원 7인, 민간위원 17인), 회의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안건 검토비 등 포함)은 1건 개최 시 민간위원 17인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¹⁾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04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억 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표 4]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49조의2 신설)	20.4	20.4	20.4	20.4	20.4	102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에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